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19 선고 2017가단77290 판결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8. 3. 22

판결 선고 2018. 4. 19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보은군 C 전 1,564㎡(이하 '이 사건 토지*라 한다)에 관하여 청구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04. 3. 23. 접수 제23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갑 제1호증,을 제나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에서 D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,이후 D에서 E, 피고로 각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

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대로 각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는,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에 의해 마쳐진 원인무효의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E, 피고의 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,또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에 의해 마쳐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이를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정수경